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9. 1

##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	1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7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10
제4장 약식평가절차 결정 .....	20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24
제6장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8

## 제1장 사업의 개요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송산그린시티와 주변지역과의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소, 도시교통의 원활한 유통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중 ‘송산그린시티~지방도 305호선 연결도로’ 및 ‘송산그린시티~신천리 연결도로’가 포함되어 있음

### 1.2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 가. 사업의 추진근거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이며, 본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함

[표 1.2-1] 사업의 추진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b>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b>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b>제29조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b> 법 제31조 전단에서 "도로·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서측지구 연결도로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총 연장 6.4km의 도로 건설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 5호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도로건설사업 등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3]의 제5호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규정을 준용함

[표 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2) 왕복2차로 이상인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b>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상인 것</b>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b>「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b>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b>실시계획의 승인 전</b> ※ 제2호 따른 협의 요청시기 적용
비 고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b>산업단지개발사업 중</b>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b>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b> 하되, <b>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b> 가. 주택지 조성사업 : [별표3] 제1호 가목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 [별표3] 제4호 나목 다. <b>도로건설사업 : [별표3] 제5호</b>	
본 사업	○ 본 계획노선 연장 : 6.37km - 신설구간 : 약 4.54km (신천리 연결도로 1.45km, 지방도305호선 연결도로 3.09km) - 확장구간 : 약 1.83km (기존 지방도305호선 및 도시계획도로 구간) - 계 산 식 : 4.54km / 4km + 1.83km / 10km ≒ 1.32 (1이상)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환경부

-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본 사업은 상위 행정 계획인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 기반영 되어 있으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3 마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건설공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제8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참조)

[표 1.2-3] 실시계획 승인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의제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
비 고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함 마. 별표2, 별표3, 별표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2의 계획
본 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본 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받을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건설공사계획이 의제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됨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환경부

### 1.3 추진경위 및 계획

- 2008. 03.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고시
- 2009. 12.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확정
- 2010. 01.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0. 09. :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고시  
-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반영
- 2011. 09.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11. 11. :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및 국도77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 이후, 동축지구 연결도로 실시계획 승인(2015. 11), 남축지구 연결도로 실시계획 승인(2018. 06)
- 2017. 11. : 송산그린시티 서축지구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8. 08.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18.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19. 01.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1.4 사업의 내용

#### 가. 시간적 범위

- 사업시행 기간 : 2019 ~ 2024년

#### 나. 공간적 범위

- 계획노선 위치  
- 송산GC~지방도305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송산면 사강리  
- 송산GC~신천리 연결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 송산면 신천리
- 계획노선 연장 : 총 6.37km  
- 송산GC~지방도305호선 연결도로 : 4.92km  
- 송산GC~신천리 연결도로 : 1.4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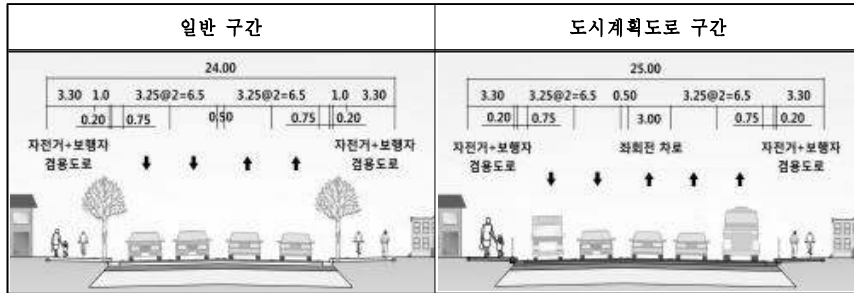
#### 다. 주요 사업내용

- 사업명 : 송산그린시티 서축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송산GC~지방도305호선 연결도로	송산GC~신천리 연결도로	전 체
위 치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송산면 사강리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송산면 신천리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송산면 사강리
연 장	4.92km	1.45km	6.37km
도로폭원	24.0m (왕복 4차로)	24.0m (왕복 4차로)	24.0m (왕복 4차로)
설계속도	70km/hr	50km/hr	50~70km/hr
주요 시설물	○교차로 : 10개소 (평면) ○교량 : 2개소/68m (수로횡단)	○교차로 : 3개소 (평면)	○교차로 : 13개소 (평면) ○교량 : 2개소/68m (수로횡단)

1) 표준횡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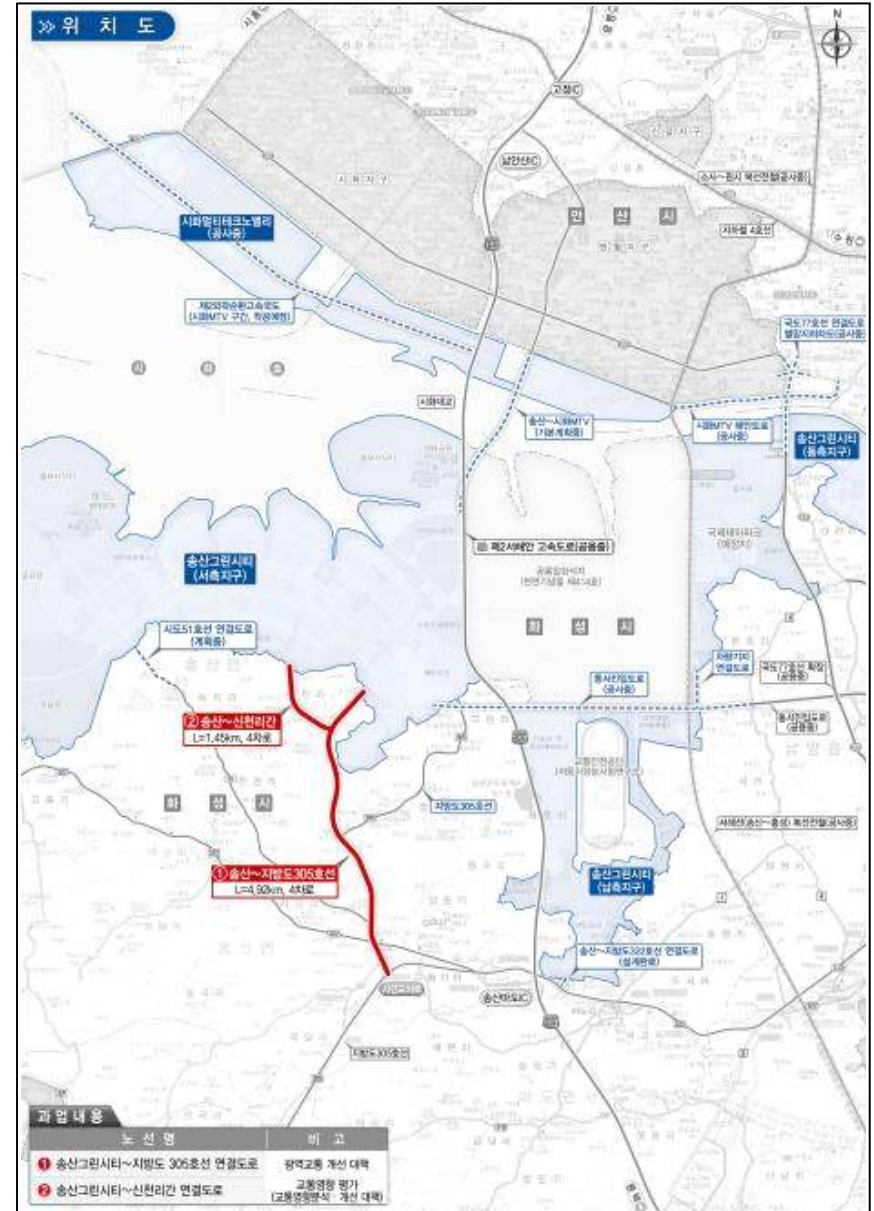
2) 교량 계획 (송산GC~지방도305호선 연결도로)

구 분	교 량 명	위 치(STA.)	연 장(m)	비 고
1	수로 1 교	0+604	30.0	수로 횡단
2	수로 2 교	1+293	38.0	수로 횡단

주) 본선에 설치되는 교량현황임

1.5 사업의 기대효과

-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으로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원활
- 주변 간선망과의 연계로 접근성 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주민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발전 촉진



(그림 1-1) 위치도

##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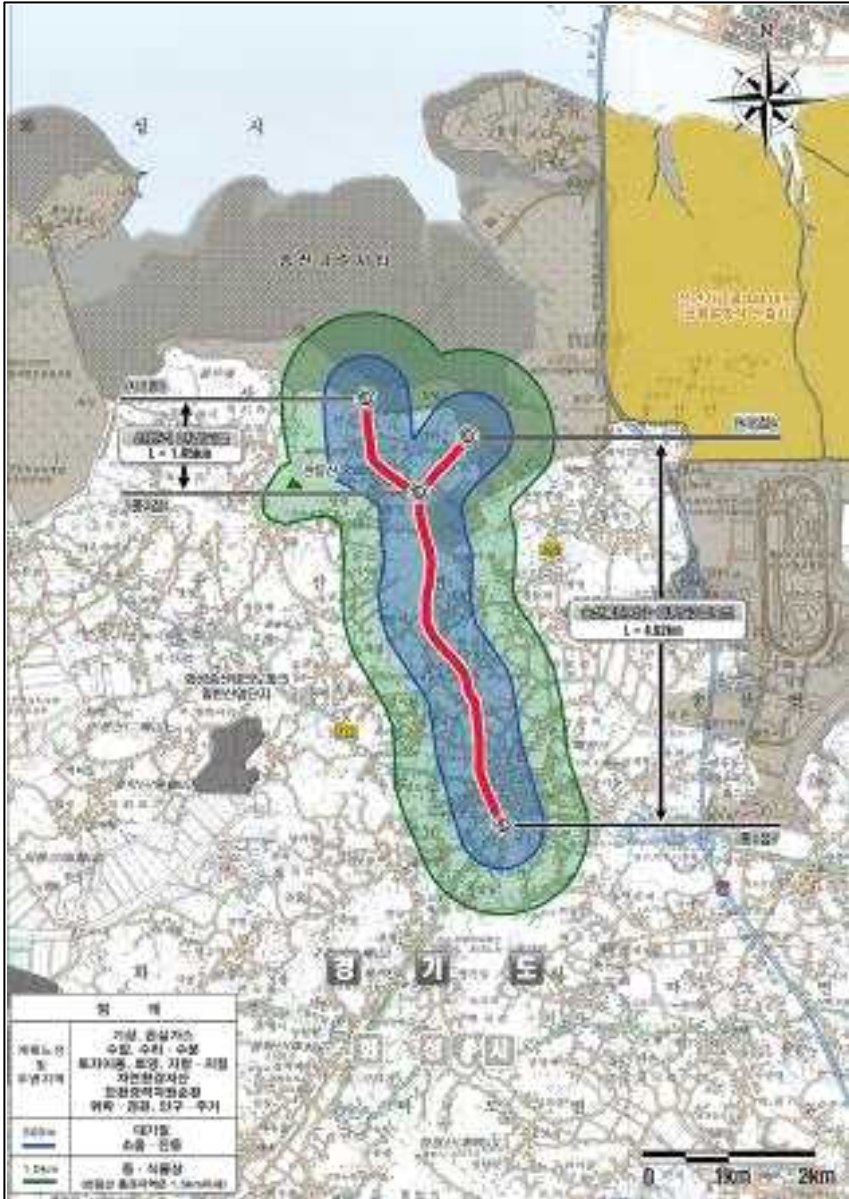
○본 계획의 수립 및 계획대상지의 입지로 인해 직·간접적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8.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 환경부」 참고)

[표 2-1] 환경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및 내용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대상지역	시 기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의 자연환경과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신천리 연결도로의 천등산 통과 지역은 천등산 최장거리를 고려하여 1.5km 이내로 조사범위 확대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1km이내)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환경	기 상	○계획노선과 인접한 기상대(수원기상대) - 대기질 영향예측시 필요한 기상자료 파악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질	○공사시 토량 운반차량 및 작업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이용차량 배출가스 증가로 인한 영향 예상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시 장비가동 및 자재 투입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차량 운행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표 2-1] 계속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대상지역	시 기
수환경	수질 및 수리·수문	○공사시 절·성토 공사로 강우시 토사 유입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수리·수문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 수계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라 토지의 편입 및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토 양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지형·지질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건설 폐기물 발생, 폐유 발생 등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장비가동, 발파 및 항타 등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운영시 계획노선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위락·경관	○계획노선 및 주변 영향이 예상되는 공원 및 관광 자원 등의 위락시설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설치로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가옥철거, 공사인부 유입 등으로 인구 및 주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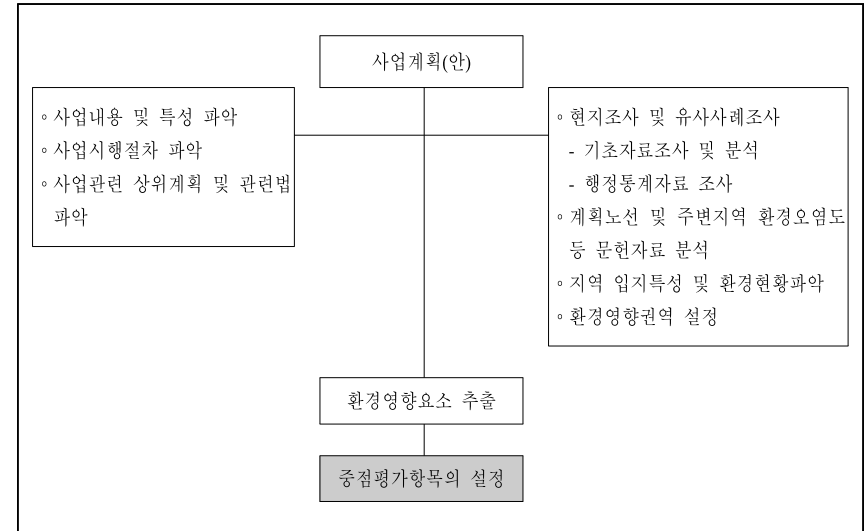


(그림 2-1) 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도

###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3.1 환경영향요소 추출

○ 본 사업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요인의 특성과 계획노선의 입지환경적 특성 등을 파악하고, 현지 개황조사, 유사 사례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노선을 포함한 주변 영향권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그림 3.1-1) 환경영향요소 추출 및 평가항목 설정

[표 3.1-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분	공 사 시	운 영 시
환경영향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지 편입 및 지장물 발생</li> <li>· 산림 지형 및 수목의 훼손</li> <li>· 토공사(결·성토, 부지정지, 토량이동 등)</li> <li>· 건설자재 운반 및 가동</li> <li>· 교량 등 구조물 공사</li> <li>· 포장공사, 배수 및 통로 공사</li> <li>·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및 구조물(교량 등)의 이용</li> <li>· 지역간 연결 및 지역 발전</li> <li>· 차량 통행량 증가</li> </ul>

3.2 평가 항목의 선정

가. 평가 항목 선정 및 선정사유

○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 선정은 상기에 추출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 중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표 3.2-1] 평가 항목 결정

분 야	중점 평가항목	일반평가(현황조사) 항목	제 외 항 목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대기환경	대기질, 온실가스	기 상	악 취
수 환 경	수질 및 수리·수문	-	해양환경
토지환경	지형·지질	토 양, 토지이용	-
생활환경	소음·진동, 경 관	친환경적자원순환, 위 탁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	인구·주거	산 업

[표 3.2-2] 중점평가 항목의 결정사유 및 주요 평가사항

중점평가항목	결 정 사 유	주 요 평 가 사 항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의 변화 ○ 현존식생 및 식생보전등급 변화 ○ 임야부 통과에 따른 수목 훼손 ○ 범정보호종의 서식환경 변화	○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서식 환경 변화 예측 ○ 현존식생 및 식생보전등급 변화 예측 ○ 산림훼손 면적 및 훼손수목 발생량 예측 ○ 범정보호종의 서식환경 변화 예측
	자연환경 자산	○ 자연환경자산(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 ○ 기타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의 훼손, 교란 등 예측 ○ 간접적 영향은 영향요인 및 정도를 예측

[표 3.2-2] 계속

중점평가항목	결 정 사 유	주 요 평 가 사 항	
대기환경	대 기 질	○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AERMOD를 통한 오염물질 확산 예측 ○ 운영시 CALINE-3 모델을 통한 오염물질확산 예측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및 건설자재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차량 통행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 지침(2015, 환경부), IPCC 가이드라인 기본배출계수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수 환 경	수질 및 수리·수문	○ 공사시 강우로 인한 주변 하천 및 농경지로의 토사유출 ○ 교량 공사시 수계의 수질변화 ○ 공사시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 운영시 초기우수에 의한 인근 수계로의 비점오염원 유입 ○ 교량 설치 등에 따른 수리변화	○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량 및 교량공사로 인한 주변 하천의 수질변화 예측 ○ 오수발생량 예측 ○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예측 ○ 수리변화 검토
		토지환경	지형·지질
생활환경	소음·진동	○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 일부 절토구간 발파 및 교량 공사시 향타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 공사시 장비투입시, 발파·향타시 소음도·진동레벨 예측 ○ 운영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도를 영향지점별 예측
		경 관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경관의 저하 ○ 구조물 설치로 인한 조망지역의 경관 변화

[표 3.2-3] 일반평가 항목의 결정사유 및 주요 평가사항

일반평가항목		결정사유	주요평가사항
대기환경	기상	○ 대기질 오염물질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상개황 파악
토지환경	토양	○ 공사시 공사장비에 따른 폐유발생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	○ 폐유발생량 예측 ○ 지장물 현황 검토 및 영향 예측
	토지이용	○ 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입용지 및 철거 지장물 발생 ○ 구조물 설치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	○ 편입용지 면적, 철거 및 이설 지장물 검토 ○ 구조물 설치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예측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노선 공사시 지장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 공사시 공사장비에 따른 폐유발생 ○ 임야부 통과로 인한 임목폐기물 발생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 ○ 폐유발생량 예측 ○ 임목폐기물 발생량 예측 ○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예측
	위락	○ 주변 위락시설의 접근성 변화	○ 위락시설 현황 및 접근성 검토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 계획노선 주변 인구 및 주거현황 및 분석	○ 통계자료 분석 및 유사사례 검토

[표 3.2-4] 제외항목

분야	항목	제외사유
대기환경	악취	○ 악취배출시설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수환경	해양환경	○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생활환경	위생·공중보건	○ 사업시행으로 인해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없거나 크지 않음
	진과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진과장해 유발요인은 없거나 크지 않음
	일조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유발요인은 없거나 크지 않음
사회경제환경	산업	○ 사업시행시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않음

### 3.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표 3.3-1]과 같음

-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자료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영향예측은 현황조사시 파악된 대상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정도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분석함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최적의 환경보전방안 수립

[표 3.3-1]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현황조사	예측방법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및 주변 1.0km (천등산 지역은 1.5k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li> <li>- 생태자연 현황(식생 현황, 생태 자연도 분포, 보전하여야할 동·식물 및 자연환경자산 등)</li> <li>○ 조사범위</li> <li>- 계획노선 주변 1~1.5km(천등산 포함) 이내</li> <li>○ 조사방법</li> <li>- 광역조사, 기존자료 조사</li> <li>-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li> <li>- 법적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정밀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서식 환경을 조사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li> <li>- 기상현황 분석</li> <li>○ 조사범위 및 방법</li> <li>- 인접 기상대인 수원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영향예측 시 기초자료 활용</li> </ul>
대기 환경	기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li> <li>- 기상현황 분석</li> <li>○ 조사범위 및 방법</li> <li>- 인접 기상대인 수원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영향예측 시 기초자료 활용</li> </ul>
	대기질	계획노선 및 주변 5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li> <li>-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li> <li>-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된 항목에 대한 현황농도 실측 (PM-10, PM-2.5, NO<sub>2</sub>, SO<sub>2</sub>, CO, O<sub>3</sub>, 벤젠, Pb)</li> <li>- 영향예상지역 정밀조사</li> <li>○ 조사범위</li> <li>- 계획노선 주변 주거지역 등</li> <li>○ 조사방법 : 현지조사, 1회 측정 시 3일연속 측정</li> <li>○ 조사지점 : 4개 지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대기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대기질 확산모델링(AERMOD, CALINE3 등)을 수행하여 예측</li> <li>-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영향예측</li> <li>- 통행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영향예측</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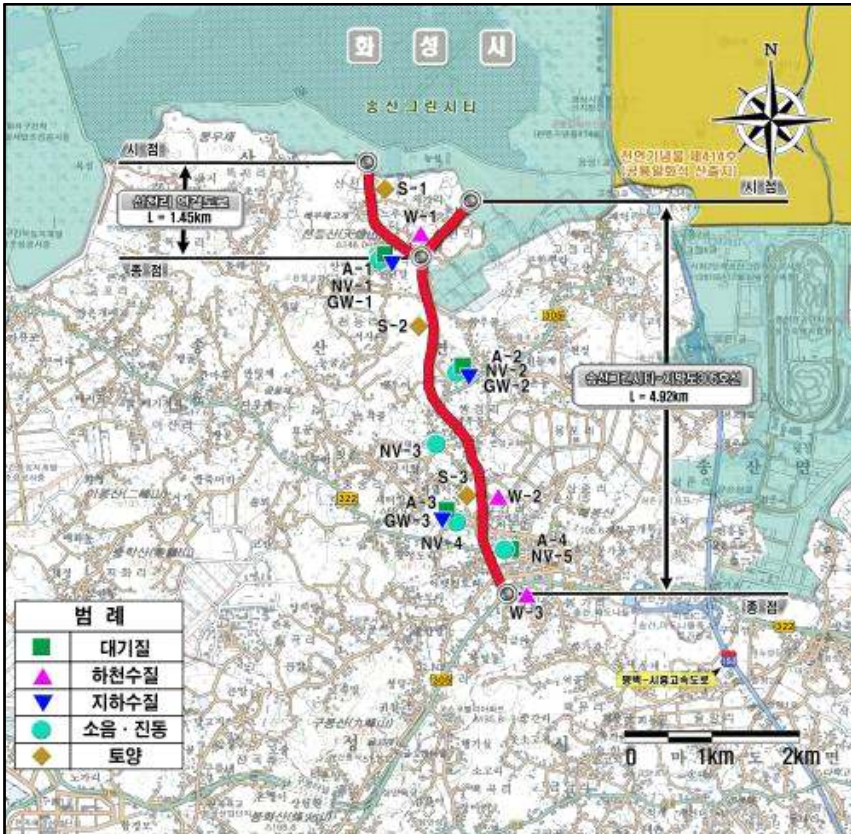
[표 3.3-1] 계속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현황조사	예측방법
대기환경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발생 현황 파악</li> <li>기존 문헌자료에 의한 원단위 분석</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산림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등 예측</li> </ul>
수환경	수질 및 수리·수문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수질 현황농도 : pH, BOD, COD 등 하천수질 환경기준 29개 항목</li> <li>지하수질 현황농도 : pH, 총대장균군, NO<sub>3</sub>-N 등 지하수질 환경기준 19개 항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 수계</li> <li>농경지, 수로, 봉가천 등</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조사</li> <li>조사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 수계 3개소</li> <li>계획노선 주변 지하수 이용 시설 3개소</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중 강우시 인근 수계 및 농경지에 미치는 토사유출 영향 예측</li> <li>교량 공사시 인근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li> <li>운영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영향 예측</li> </ul>
토지환경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별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및 주변(화성시)</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파악</li> <li>지역간 단절구간 발생시 교차로, 암거 등 대책 수립</li> </ul>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지역 임야 및 농경지 등의 토양현황 실측 (Cd, Cu, As 등 토양오염우려기준 21개 항목</li> <li>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존재여부 파악</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자료 및 현지조사</li> <li>조사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 토양 3개소</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예측</li> <li>지장물 철거시</li> <li>공사장비 가동시 폐유 발생</li> <li>발파시 화약 사용 등</li> </ul>

[표 3.3-1] 계속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현황조사	예측방법
토지환경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형형상, 지질상황 등</li> <li>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화 정도 평가</li> <li>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훼손 여부</li> <li>토공량 예측, 비옥도 발생 등 검토</li> </ul>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현황</li> <li>폐기물 처리시설 현황</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자료 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 예측</li> <li>지장물 철거 및 구조물 공사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li> <li>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li> <li>장비투입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 발생</li> </ul>
	소음·진동	계획노선 주변 5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소음도 및 진동레벨 현황 실측</li> <li>정온시설 정밀조사</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 주거지역 등의 정온시설</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조사</li> </ul> </li> <li>조사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개 지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li> <li>소음·진동 예측식 이용</li> <li>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li> </ul>
사회경제환경	인구 / 주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위락, 경관요소 분포현황 등</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자료 및 현지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지형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li> <li>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로 인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변화 예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 인구 및 주거 현황조사</li> </ul> </li> <li>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및 주변지역</li> </ul> </li> <li>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자료 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노선 주변 인구 및 주거 현황 및 분석</li> <li>지역간 단절 및 용지 편입 등으로 인한 영향 분석</li> </ul>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및 수계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측정지점을 선정함
- 동식물상 조사는 계획노선을 포함하여 주변지역을 광역적으로 조사하고 육수 동·식물상 조사를 위해 주변 수계를 포함하여 조사지점으로 선정함



(그림 3.3-1) 환경질 조사지점도

### 3.4 기타

#### 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범위 중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에 계획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해당됨

[표 3.4-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보전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관보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li> <li>○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li> <li>○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li> </ul>
보전지역 주변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사업</li> </ul>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예규 561호), 2015, 환경부

#### 나.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로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의 수계에서 의무제로 시행중임
- 계획노선이 속한 화성시 송산면은 한강수계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 다. 연안오염총량관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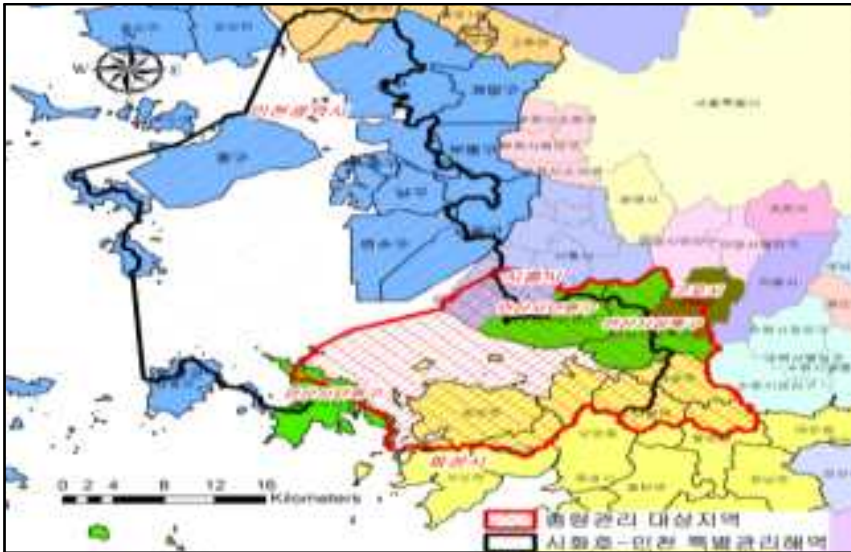
-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 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외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함
-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는 구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로서,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 연안 등의 연안에서 시행 중임

- 본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화성시 송산면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에 포함되며, 연안오염총량 할당 협의를 득하여야 함
- 제2차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의 계획기간은 2018.01.01~2022.12.31, 대상오염물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목표수질 3.1mg/L) 및 총인(T-P, 목표수질 0.053mg/L)로 조사됨

[표 3.4-2]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범위

구분	유역내 행정구역	면적(km <sup>2</sup> )
화성시	매송면, 봉담읍 일부, 비봉면 일부, <b>송산면</b> , 마도면 일부, 서신면 일부, 남양읍 일부	163.45

자료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화성시 시행계획



(그림 3.4-1)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도

## 제4장 약식평가절차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은 약식평가서를 작성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 요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 본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다음과 같이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 사업규모 : 본 도로 건설사업의 규모는 총 6.37km(신설구간 4.54km, 확장구간 1.83km)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규모(도로의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 '1')의 약 1.32배로서 약식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 지역특성 : 계획노선 내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식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 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심의위원 8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중 다수(7인,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약식평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함**

[표 4-1]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구분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p><b>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li> <li>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li> <li>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li> <li>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li> <li>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li> </ol>

[표 4-1] 계속

구분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p><b>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b></p> <p>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승인기관장등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p><b>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b></p> <p>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li> <li>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li> <li>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li> <li>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li> <li>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li> <li>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li> <li>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li> <li>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li> <li>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li> <li>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li> <li>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li> </ul> </li> </ol>

[표 4-1] 계속

구분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p><b>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b></p> <p>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li> <li>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b></p> <p>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p> <p><b>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b></p> <p>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li> <li>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li> <li>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li> <li>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li> <li>부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li> <li>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li> <li>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li> <li>라. 용어 해설 등</li> </ul> </li> </ol>

[표 4-2] 약식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 검토 결과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사업규모	○평가대상 최소규모의 2.0배 이하	○사업규모가 평가대상 최소규모의 1.32배로서 약식평가 대상규모에 해당 - 사업 연장 : 6.37km (신설구간 : 4.54km, 확장구간 : 1.83km) - $(4.54 / 4) + (1.83 / 10) \approx 1.32$
지역특성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식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지속하지 않음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속하지 않음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지속하지 않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속하지 않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속하지 않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지속하지 않음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속하지 않음	
검토결과	본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b>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다수(7인,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약식평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함</b>	

##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5.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제출, 공람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p><b>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b></p> <p>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p> <p>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li> <li>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⑥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공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5.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약식평가서) 관계기관 제출

####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제1항

####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약식평가서)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의견 수렴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 화성시
- 승인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사업지역 관할 시·도 : 경기도

#### ○ 의견 통보 기간 :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약식평가서) 공람 공고

####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제1항

#### ○ 공고 주체 : 주관 시·군·구 (화성시)

#### ○ 공고 시기 :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

#### ○ 신문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 공고 내용

- 사업의 개요
- 평가서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화성시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평가서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평가서

####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 공람 장소 : 사업지역 관할구역에 1개소 이상 (화성시 송산면)

###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1) 설명회

#####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제1항

##### ○ 설명회 개최 주체 :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 ○ 설명회 시기 : 공람 기간 내

#####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 평가서 공람공고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

#### 2) 공청회

#####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제1항

#####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라. 주민의견 제출

####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제1항

#### ○ 의견 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 제출 의견 : 주관 시장(화성시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마.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구변관리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제1항
- 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 공개 시점 및 기간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14일 이상 게시
- 내용 게시 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제6장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6.1 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함

### 6.2 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2018년 12월 5일 ~ 12월 17일(서면심의)
- 협의회 위원 구성

구분	소속	성명	비고
위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	승인기관
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	승인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협의기관
	화성시 기후환경과	○○○	관할 지자체
	수원대학교	○○○	민간전문가
	수원대학교	○○○	민간전문가
	송산면 신천리 이장	○○○	지역대표
	화성 연안환경문화연대	○○○	시민단체

### 6.3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결과 (송산GC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
  -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약식평가 절차 실시 여부 및 의견 수렴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결정

□ 협의회 심의 주요 내용

- 심의안건 : 송산GC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 심의방법 : 서면심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 심의내용
  - 평가 대상지역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평가 항목, 범위, 방법
  - 약식평가 절차 실시여부
  - 주민의견 수렴 계획 등

□ 협의회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승인기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승인기관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협의기관
	화성시 기후환경과			관할 지자체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추천)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민간전문가 (지자체 추천)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화성시 연안환경문화연대				시민단체 (지자체 추천)

□ 협의회 심의결과

○ 총괄의견

심의위원	심의의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송산그린시티 본단지 환경평가협의 내용 및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기 바라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이 대부분 생태자연도 2, 3등급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 자연훼손 최소화 필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본 계획노선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서측지구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0호, '17.12.20)
화성시 기후환경과	○도로 노선의 선경·공사·운영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 예측, 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은 일부 공장을 제외하면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농촌 및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도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의견없음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사람이 편지인 화성에서 도로건설은 사용자와 주민의 편의위주로 건설하여야 함
화성시 연안환경문화연대	○의견없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심의의원	심 의 의 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별정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기 바람 주민, 가축, 농작물 등의 인접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공하기 바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본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의 예상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환경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대기질, 소음·진동, 지형·지질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업부지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사업지구 주변에 운영 및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화성시 기후환경과	○사업대상지역과 인접한 천등산과의 최장 거리를 감안하여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1.5km로 설정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의견없음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의견없음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도로공사시 주변의 주거지와 축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화성시 연안환경문화연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별다른 이의가 없음

○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심의의원	심 의 의 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주거지를 통과 또는 인접하는 구간 공사의 경우에는 법정 기준 이상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필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환경상 악영향 및 지역 주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환경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사업노선 주변지역의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등) 등에 대기,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될 경우 사업노선 조정, 충분한 완충녹지(생태방음벽 등) 확보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여야 함
화성시 기후환경과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가옥, 축사 등 정온시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시 및 도로 운영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계획도로의 표준횡단을 보면 약 3.3m의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가 도로 양측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바닥을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함, 이를 위하여 도로표면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각 구간을 별도의 다른 색으로 도색하여 포장하도록 함. 아울러 일반구간에만 현재 가로수 식재계획의 수립이 계획된다면,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구간의 식재가 더욱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도로구간에도 가로수 식재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연장 30m의 두 개 교량이 신설되는 바 교대, 교각 그리고 교량의 펜스 등의 재질이 환경친화적이거나 교량의 벽면 녹화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도 친환경적 외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교량의 외부계획을 수립함이 바람직 함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의견없음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도로는 사용자의 편의와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설하여야 함 ○신천리간 연결도로 1.45km는 마을 중심지를 통과하는 도로이며, 현재 주거지와 인접하므로 주거지 저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선을 변경하기 바람
화성시 연안환경문화연대	○마을 관통 도로를 지하화 할 것을 건의 드리며, 일반 관통시는 천등산 자락과 연계된 동물 이동통로를 만들어 줄 것과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설계하길 원함 (사진 참조)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심의의원	심 의 의 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공사진행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지장을 철거가 발생될 경우 발생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 필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신천리마을 통과구간 및 기존 지방도 305호선 확장구간은 다수의 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도로 공사시 및 공용중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환경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동·식물상 조사는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을 반영하고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감안하여 조사시기, 조사횟수, 조사지점·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특히, 법정보호종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증명 제시 ○대기, 수질, 소음·진동, 지형·지질 등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범위 선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및 주변 정온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공사시 발파가 예상될 경우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등에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 - 현재 운영 중인 노선 및 신설 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포함)을 현황도에 증명하여 표시 ○대기질 현지조사는 계절별로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설정하여야 함 ○현황조사 지점은 공사 및 운영시 영향예측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항목별 조사시기, 조사지점(도면) 등 구체적으로 제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 영향예측 및 결과는 저감방안 강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하되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계획노선 주요 조망점(경·성도 사면지역, 교량 주거지역 등)에서의 경관영향을 분석·제시하여야 함
화성시 기후환경과	○4.3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에 발산산업단지 약취관리지역을 추가 기재 ○동·식물상 조사는 풍 출현 및 생육이 활성화 분절을 포함하여 조사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경관분야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교차로를 중심으로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훼손된 농촌경관의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평가시 영향예측식을 이용한 방법 이외에 정온시설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된 조사지점 이외에 필요시 발음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실측자료를 확보하기 바람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도로공사시 먼지 발생 및 소음 등이 예상되므로 주거지에 분진망 설치와 우사 주변의 방음벽 설치를 하시기 바람(도로 건설후 철거) ○물길 변경으로 인한 수해지역이 없도록 하기 바람
화성시 연안환경문화연대	○의견없음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심의의원	심 의 의 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설계단계부터 주민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소통채널을 강구 바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제시된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환경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화성시 기후환경과	○공고·공람,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외에 민원이 우려되는 구역은 추가로 사전협의를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 수립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의견없음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의견없음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설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공사시 의견 충돌이 없도록 하기 바람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화성시 연안환경문화연대	○도로 개설로 신천리 마을이 분단되므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것을 권고함 ○공사시 주민 민원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화가 필요함

○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결정 : 심의위원 8인 중 다수(7인,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약식평가 절차로 진행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약식평가 가능 다만,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에 대해 공람, 설명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조치 필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약식평가 가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해당사업은 도로를 신설(약 4.5km) 및 확장(약 1.83km)하는 사업으로, 도로 신설·확장 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약식평가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화성시 기후환경과	○여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본 사업의 성격상 환경과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약식평가의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약식평가 가능
화성시 송산면 선천리	○주민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화성시 연안환경문화연대	○가능하다고 생각함

○ 기 타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의견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의견없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동 심의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화성시 기후환경과	○의견없음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의견없음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의견없음
화성시 송산면 선천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 ○수로 1교의 높이를 현 농로에서 1m 높이로 하고 현 계획중인 통로박스의 설치를 반대하며, 현 삼거리 교차로를 사거리로 하여 신호에 의해 농기계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선천리 보건소 앞 교차로는 주민(노령자)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4차선이므로 한번 신호에 횡단하기 어려우므로 지하(승강기이용)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바람 ○선천리 278번지 주변에 교차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현재 설계하고 있는 도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비용으로 도로건설을 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차후에 보상 문제 등 협상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보완하시기 바람 ○기존 도로 단절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화성시 연안환경문화연대	○의견없음